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 토 보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계획안은 2015년 10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 출연 예정금액 : 102,186천원(도비 100%)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681,237,173\text{천원} \times 1.5/10,000 = 102,186\text{천원}$$

□ 출연계획 (단년·반복사업)

(단위: 천원)

구분 (기준보조율)	2015년			2016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도비(100%)	80,333	80,333	0	102,186	21,853

4. 검토의견

금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결받기 위한 것으로

(재)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011년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는 연구원으로써,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금번 출연계획안은 201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681,237,173천원의 1만분의 1.5인 102,186천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부. 끝.